

#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2005~65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5. 11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## ■ 제정이유

-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04. 7.30. 대통령령 제18504호)됨에 따라,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『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』를 제정코자 함.

## ■ 주요골자

- 특별회계설치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.(안 제1조, 제2조)
- 세입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,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함.  
(안 제3조)
-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함.(안 제4조)
- 이월금 및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.(안 제5조)
- 금고설치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.  
(안 제6조)
- 회계공무원의 지정.(안 제7조)
-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준용.(안 제8조)

## ■ 제정근거

-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44조
-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5조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.

제3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,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4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,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.

제5조(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)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 완료후의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(금고의 설치)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.

제7조(회계공무원 지정)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건설과장, 출납공무원은 건설행정담당주사로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